

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운영규정

2020.08.01. 제정 2020.10.01. 일부개정

<미래전략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「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+)」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「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」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에 설치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관리·집행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4차 산업혁명 기반 대학 교육혁신 체제 구축 지원
2. 혁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
3. 교육·학습법 혁신 지원
4. 교육환경 혁신 지원
5. 학생 질 관리 및 교육모델 성과관리 지원
6.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 지원
7. 기타 사업단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사업단에는 행정지원팀과 디지털트윈교육혁신센터를 둔다.

- ② 사업단은 주관학과(부)와 참여학과로 구성하며, 주관학과(부)는 조선해양공학부로 하고 참여학과(부)는 자동차공학과와 기계공학부로 한다.
- ③ 참여학과(부)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협조의 의무와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, 사업수행의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.(개정 2020.10.1.)

1.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
2. 대학차원의 지원 사항
3. 자체평가 결과 및 환류에 관한 사항
-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전략기획부총장이 맡으며 위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(개

정 2020.10.1.)

1. 사업단 규정 및 사업비 집행지침 제·개정
2.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
3. 교육과정 심의, 교육성과 확인 및 개선사항 제안
4. 사업비 집행 심의

5. 사업비 예·결산 심의

-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7명 내외로 구성하며, 주관학과 및 참여학과의 학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디지털트윈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) ①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트윈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, 연차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
2.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
3. 각 프로그램 운영지침 심의
4. 사업비 집행 및 심의 안 작성
5. 세부사업 진행 진단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정기점검
6. 교육과정 및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7. 산업체 재직자 교육 운영

-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, 위원은 7명 내외로 구성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단의 성과 및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 자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.

1. 사업성과 및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
2.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사업추진 실적 분석
3.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조치계획 수립

- ② 위원장은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하고, 위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산학협력위원회) ①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.

1. 산학연계교육과정 개발 및 검증
2. 졸업생 및 학생의 질 관리
3. 재직자 교육 수요조사 및 발굴

-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사업비) 사업단의 사업비는 교육부(한국연구재단)가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비로 한다.

제11조(사업비 집행) 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비의 주요 집행기준은 한국연구재단 「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」을 적용한다.

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

제12조(사업비 관리)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, 국고 지원금의 입·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타)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승인일로부터 이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